



제 317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도시교통위원회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1. .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국)김지훈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비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설 개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자동차관리과
- 라. 입법예고 : 2026. 1. 27. ~ 2025. 2. 1. (5일간)
-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확산 등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에 자동차 검사시설 개선사업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조합 등이 실시하는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고효율 전기자동차 보급·이용의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영세한 내연기관 정비업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 여려지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2023. 5. 25., 2025. 4. 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본조신설 2003. 1. 2.]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 □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 (현행 조례)

#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2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1조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관리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모범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수

립·시행 추진을 적극 노력해야한다.

-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은 남양주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산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정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8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표지판 지원
4.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제12조(모범사업자의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감독)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준용)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254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나. 재정 수반 요인

본 조례안 재정수반요인은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를 일부 개정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용에 해당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3. 미첨부 사유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이 진행된 적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관련 조례의 미작성 사유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 4. 작성자

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